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남부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최현철

전화 02-3219-4420 / 팩스 02-3219-2397

보도자료 2024. 8. 22.(목)

「부실 드라마제작사 고가인수 사건」수사 결과 - 엔터테인먼트 회사 前 대표이사 및 임원 기소 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
- 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-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(부장검사 김수홍)는 **甲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** A와 투자전략부문장 B가 甲 社로 하여금 B 소유의 부실 드라마제작사 乙 社를 고가에 인수하게 함으로써, B는 319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A는 그에 대한 대가로 B로부터 총 12억 5,64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A와 B를 각 불구속 기소하였음
 - A와 B는 甲社로 하여금 '17. 2. 설립 후 **아무런 매출이 없던 乙社**를 거액에 인수하게 하기 위해 '19. 4.경부터 **甲社 자금 337억 원을 乙社에 투입**하고 그 자금 중 일부로 작가·PD 등을 영입한 후, 甲社 에서 乙社 지분을 **400억 원이라는 고가에 인수**하게 하였음
 - A와 B는 그 과정에서 ① 乙社가 B 소유인 사실을 甲社 내부에 숨겨 내부통제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, ② 외부 회계법인 실사나 가치평가 없이 임의로 고가의 인수가액을 결정하였으며, ③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수 과정 중간에 제3의 업체를 통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음
 - A는 B로부터 乙社 인수를 도와준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B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사용하였고, 고가의 미술품·다이아목걸이 등 사치품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되었음
- 본건은 드라마·영화제작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보유한 대기업 계열사 경영진이 **회사 내 지위를 악용**하여 **거액의 이익을** 취득한 후 **사치스러운 생활**을 영위하고, **회사에 손해**를 가한 사안임
- 서울남부지검은 향후에도 불법적인 사익추구를 위한 기업 임원진의 경영 비리에 엄정 대응하여 공정한 기업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음

피고인

- A (62세, 甲엔터테인먼트 前 대표이사)
- B (49세, 甲엔터테인먼트 前 투자전략부문장 / 乙 社 실소유주)

Ⅱ 공소사실 요지

● 피고인들의 공동범행

가.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

- (공모 내용) '17. 2. 설립 후 매출이 전혀 없고, 사무실·직원도 없어 정상 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던 **드라마제작사** 乙 社가 **사실은 B가 실소유한** 회사라는 사실을 甲社 내부에 숨기고, 피해자 甲社 자금을 투입하여 작가 · PD 등을 영입한 다음 甲社가 乙社를 고가에 인수하기로 공모하였음
- (범죄 사실) ① '19. 4.~ 9. 甲 社에서 乙 社에 드라마 기획개발비 및 대여금 등 합계 337억 원을 지급하고, 乙社는 그 중 일부로 작가·PD 등 영입 → ② '19. 11. 28. 丙社로 하여금 乙社를 400억 원에 인수하게 함 → ③ '20.3.~5. 甲 社가 丙 社로부터 乙 社를 400억 원에 인수함
- (이익 및 손해) B는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31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, 피해자 甲 社에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
 - ※ S대 로스쿨 C교수의 자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, 甲社가 乙社에 지급한 총 금액(737억원)에서 ▲작가·PD 등 영입에 지출된 금액(257억원), ▲乙社 설립 자본금(1억원). ▲甲社의 乙社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 변제금 및 乙社 운영자금(160억원) 등을 공제한 금액

나.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

- B가 A에게 乙社 인수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B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 등을 A에게 건넨 다음, '19. 12.~ '23. 7.까지 A가 **합계 12억 5,646만 원**을 사용함

다.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

- 위 나항과 같이 B가 乙社 인수 관련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A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B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A에게 건네고 A가 이를 사용하여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
-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
 - '17. 2. 乙 社가 다른 컨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.5억원을 보관하던 중 정상적인 대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부동산 매입·대출금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10억 5,000만 원을 임의사용함

Ⅲ 수사 경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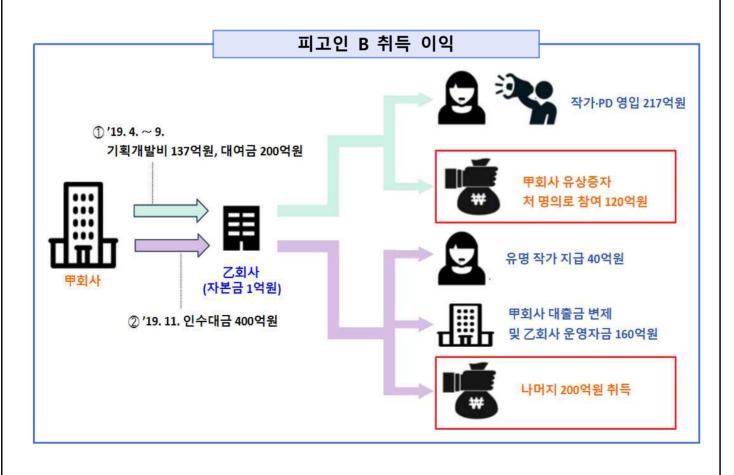
- '23. 11. 22. 甲 社, A 및 B 주거지 등 압수수색
- '24. 1. ~ 2. 甲社 관계자, A 및 B 등 조사
- '24. 2. 1. A 및 B 구속영장 기각※ 기각 사유 : 손해액 등 다툴 여지 있고, 객관적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있음
- '24. 2. ~ 3.甲 社 관계자 조사 등 보완수사
- '24. 3. 21. A 및 B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※ 기각 사유 : 피해회사 손실 및 규모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 있음
- '24. 8. 22. A 및 B 각 불구속 기소

Ⅳ 수사 결과

최고 경영자와 임원이 결탁하여 회사 자금으로 거액의 사익 추구

● 대기업 계열사인 甲 社의 대표이사 A와 투자전략부문장인 B가 결탁하여 B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 드라마제작사 乙 社를 甲 社가 고가로 인수해주고,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 B가 A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음

- 乙 社는 '17. 2. 설립 후 인적·물적 시설이 없어 제작활동이 전무하였고 설립 후 3년간 매출도 전혀 없는 상태였음에도, 乙 社 인수를 위한 사전작업 으로 甲社 자금을 투입하고 그 자금 중 일부로 작가와 PD 등을 영입하였음
 - ※ 甲社로부터 지급받은 기획개발비 137억원, 대여금 200억원 등 합계 337억원 중 작가 및 PD 등 영입에 217억원을 지출하고, 나머지 120억원은 B가 처 명의로 甲社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개인적 이익 취득
- 이후 제대로 된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나 가치평가 없이 임의로 乙 社 인수 가액을 400억 원이라는 고가로 결정하여 B는 거액의 이익 취득
 - ※ B는 인수대금 중 40억원은 유명 작가에게 지급하고, 160억원은 甲社에 대한 乙 차의 변제금 및 乙計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나머지 200억원의 이익 취득
- 결국, B는 1억 원의 비용을 들여 乙 社를 설립한 후 자신이 소속된 甲 社로 하여금 737억 원의 돈을 들여 乙 社를 인수하게 함으로써, 최종적으로 설립 비용 1억 원을 제외하고 319억 원이라는 거액의 이익을 취득하였음



특수관계자 거래를 적극 은폐

- 피고인들은 B가 乙 社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甲社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, 위와 같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숨기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인 丙 社로 하여금 乙 社를 먼저 인수하게 한 후 다시 甲 社가 丙 社로부터 乙 社를 인수하는 방법을 사용
 - 甲社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위 內社 임원들조차도 B가 乙社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, 甲社에서 다시 사갈 것이니 乙社를 잠시 인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社를 인수하였음
- 甲社 윤리규정상 임직원은 **이해상충**의 여지가 있는 경우 회사와 **거래가 금지** 되고 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에도, 피고인들은 **내부절차**를 전혀 지키지 않은 채 투자 및 인수를 진행하여 **내부통제시스템을 무력화**하였음

범죄수익을 장기간 은밀히 분배하여 명품 등 구입

- B는 범행으로 취득한 거액의 범죄수익으로 고가 아파트, 골드바 등을 구입하고, 乙社에 대한 자금지원 및 乙社 인수를 최종 결재한 대표이사 A에게 범행에 대한 대가로 B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고, A는 위 돈으로 미술품·다이아목걸이 등 명품을 구입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
 - B는 乙社 인수대금을 받은 직후인 '19. 12.경 B 명의 계좌 2개를 신규 개설하며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발급받았고, 위 통장과 체크 카드 등을 A에게 건넨 후 위 계좌에 합계 18억 원을 입금
 - A는 B명의 통장 2개를 A의 지문으로만 열 수 있는 **금고에 은밀히 보관** 하며, '19. 12.부터 '23. 7.까지 **합계 12억 5,646만 원**을 사용하여 B로부터 **월평균 2,850만 원을 수수**
- 범행을 도와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위와 같은 교묘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, 본건 수사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면서 A의 카드사용 및 B의 대가지급이 중단되었음

V 수사의 의의 및 향후 계획

- 본건은 대기업 계열사의 최고경영자와 임원이 내부통제시스템을 무력화하고 회사자금으로 위 임원이 소유한 부실회사를 거액에 인수하기로 '설계'한 다음 범행을 통해 취득한 거액의 이익을 상호 분배한 사안으로, 검찰은 압수수색· 계좌추적·관련자 조사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사안의 전모를 규명하였음
- 향후에도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역량을 발휘 하여 기업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엄벌하고,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윤리 **확립**을 위해 노력하겠음 **!!!!**